

2. 주요내용

「해외건설 축진법 시행령」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8년 2월 5일
국토교통부장관

「해외건설 축진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

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해외 인프라, 도시개발 분야에서 우리 건설기업의 투자개발사업 진출 확대를 위하여 사업의 발굴 및 추진, 금융 지원 등의 역할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지원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으로 「해외건설 축진법」 이 개정(법률 제14956호, 2017. 10. 24. 공포, 2018. 4. 25. 시행)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시행중인 일부 조항은 실정에 맞게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- 가. (자본금의 출자) 법 제28조의4제2항제4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”란 한국수출입은행, 한국산업은행, 한국투자공사,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을 말하고, 출자질차 등은 「상법」 준용(안 제29조의2)
- 나. (운영위원회의 구성 등) 법 제28조의8 제1항제4호의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부처의 장”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민간 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운영위원회 심의·의결사항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하여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(안 제29조의9)

- 다. (운영위원회의 운영) 지원공사의 이사와 감사는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, 운영위원회의 제척·회피 사유와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의 해촉 사유를 규정(안 제29조의10)
라. (차입) 법 제28조의18제1항에 따라 지원공사가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기관은 한국수출입은행, 한국산업은행, 국제금융기구, 그밖 에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자(안 제29조의13)
- 마. (해외건설전문 투자금융인력) 해외건설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전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대상의 직무분야, 종사기관 등 확대(안 제23조)
바. (해외건설업 신고면제대상 지방공기업) 해외건설업 신고없이 해외 건설업을 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의 범위를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, 지방직영기업, 지방공단으로 함(안 제10조제2항)

3. 의견제출

i)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)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현 행	개 정 안	의 견
-----	-------	-----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(우편번호 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
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
- 전자우편 : nhs0930@korea.kr
- 팩스 : 044-201-5546

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(전화 : 044-201-4813 팩스 : 044-201-5546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